

의안 번호	149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]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8.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9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2. 3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경제국장 최이식)

### 가. 제정이유

-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지원 등을 확대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및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(안 제2조, 안 제3조)
- 자금의 지원 및 자금의 용도(안 제4조, 안 제5조)  
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, 특례보증 지원, 이자 지원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- 업무위탁, 변경신고, 사후관리, 보고 등(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조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유경달)**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규정에 근거하여
-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,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.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 거 법 규

#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 ①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.

1.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
2. 그 밖의 업종: 5명 미만